

2021년 「유망기술 사업화촉진지원사업」 공고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유망기술 사업화촉진지원사업」의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국장

1.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既개발·휴면 상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既개발·휴면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화 패키지 선택적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사업화 패키지 | - 설계·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 | - 시제품제작 |
| | - 금형제작 |
| | - 마케팅지원 |
| |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
| 성장지원 프로그램 | - 기술멘토링 : 선택 |
| | - 기술가치평가 : 선택 |

- (용어정의) 세부 지원내용별 용어 정의

| 주체 | 용어 | 정의 |
|----------|---|--|
| 수행 기업 |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 -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지원제품을 실제 제품형태로 디자인 또는 포장패키지를 디자인하는 것 |
| | 시제품 제작 | -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 |
| | 금형제작 | - 양산을 위해 제품의 금속 주형(틀)을 제작하는 것 |
| | 마케팅지원 (지원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 지원) | - 마케팅 전략 수립 1) 제품진단 : 소비자/전문가 리서치 활동을 통한 제품의 시장가치 판단 및 개선방향 도출 2) 마케팅 전략 수립 : 유통채널 MD(바이어) 및 마케팅 전문가의 코칭을 통한 지원제품 경쟁력 발굴 및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 브랜드개발 :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CI/BI), 브랜드 중장기적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브랜드 콘셉트 분석 지원 등 - 홍보물 제작 : 인쇄 홍보물(홍보용 브로슈어, 카탈로그) 제작 |
| | 성능평가 (필수) | -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수정 및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 ※ 반드시 성능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함 |
| 전담 기관 | 기술멘토링 (선택) | - 성능/신뢰성, 설계/해석, 디자인 등 기술분야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멘토(전문가)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
| | 기술가치평가 (선택) | - 기술 타당성 검증, 기술거래, 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 기술 이전 및 거래, 기술담보, 투자유치 등으로 활용 가능하나 재무재표 내에 포함할 수 없음 |

- ※ **성능평가(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 설계·제품 및 포장디자인의 경우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 결과물을 반영하여 제품화**하여야 함
- ※ **기술멘토링(선택)** : 성능/신뢰성, 설계/해석,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위원 매칭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상시신청/기업당 2회 제한)
- ※ **기술가치평가(선택)** : 사업과 관련된 기술(특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희망기업에 한해 지원함(8월~9월 예정/3개사 내외)

□ 지원 규모

○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45,000천원 내외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 정부지원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부담 100%) |
| [예시] 총사업비 56,250천원 중 정부출연금 45,000천원 | [예시] 총사업비 56,250천원 중 민간부담금(현금)11,250천원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21. 11. 30. (약 8개월 간)

○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마케팅비, 시험평가비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지원하며, 정산수수료는 사업비와 별도로 민간부담

* 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이 책정한 정산수수료에 따르며,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실시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21년 진흥원 지원사업 및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활용 불가

3. 지원대상 및 선정제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既개발 완료된 로봇제품(완제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하되, 유망분야(제조* 및 4대 서비스** 분야) 지원의 경우 가점 부여

* 제조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협동로봇 및 부속품(그리퍼, 엔드이펙터 등) 제품화 지원 등

**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분야

○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 지원요건 | 추진체계 |
|---------------------------------------|------------|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 주관은 기업만 가능 |

- (유의사항)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21년 11월까지 로봇 제작 및 로봇 투입·운용, 시험성적서 발급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3년('18년~'20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제외)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 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사전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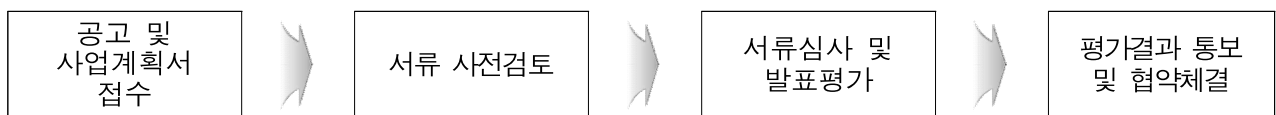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후관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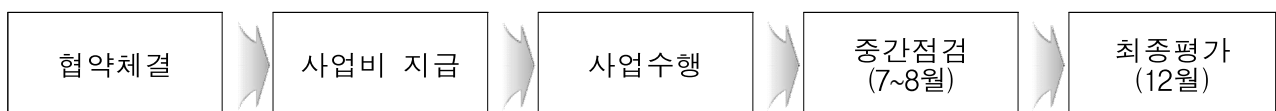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4. 추진 절차

□ 과제 선정 절차



□ 과제 수행 절차



5.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 (평가방법)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사업화 및 로봇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원가 타당성 검증과 시장가치 파악을 위해 평가위원으로 용역·금형·제작 전문가 포함
-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 과제 총괄책임자가 발표를 진행하며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
 - *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전환 가능
- (최종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 평가기준

- (평가기준) 기술성 및 사업성,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 평가

| 평가항목 | | 세부내용 | 배점 |
|---------------|-------|--------------------------------------|------------|
| 기술성 (35%) | 우수성 | ○ 제품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 20 |
| | 적정성 |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15 |
| 사업성 (35%) | 성공가능성 |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 15 |
| | 마케팅 |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0 |
|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 10 |
| 수행능력 (30%) | 완성도 |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15 |
| | 사업비 | ○ 사업비의 적정성 | 15 |
| 합 계 | | | 100 |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가점 반영
- *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추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제외'

○ (우대 및 감점 기준) 선정평가 시 발표점수에 가감점

| 구분 | 내용 | 비고 |
|----|---|------|
| 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분야 (제조 및 4대 서비스 분야) (2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3항 우대기준 (1점)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1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 시 우대 (1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최종 결과 평가 우수 이상 (1점) | 최대 5 |
| 감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4항 감점기준 | |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1.2.8(월) ~ '21.3.9(화), 17:00까지

□ (접수기간) '21.3.3(수) ~ '21.3.9(화), 17:00까지

* 지정시간 內 '이메일' 및 '우편접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관련양식 작성 후 전자파일은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 사업공고

○ (접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 (우편접수) (우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노원동 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층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최혜지 선임

- (전자파일 제출처) 글로벌성장팀 최혜지 선임(hyeji@kiria.org)

* 메일 제출 후 담당간사 유선 연락(053-210-9680)을 통한 접수 확인 必

□ 구비 서류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 원본 1부, 사본 3부 |
| 2 |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본 각 1부 |
| 3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지정양식, 각 1부 |
| 4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지정양식, 1부 |
| 5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6 |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표지포함) 및 회계감사보고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제출 | 2019, 2020년 각 1부 |
| 7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 사본 1부 |
| 8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 금형제작 분야 지원 시, 사본 1부 |
| 9 | 참여의사 협약서 | 지정양식, 1부 |
| 10 | 민간부담금(현금) 출자협약서 | 지정양식, 1부 |
| 11 |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 제작대행기관별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부견적서 첨부 | 지정양식, 1부 |
| 12 | 기타 증빙서류(우대사항 증빙서류) 및 기업 소개 자료 등 | 해당시 제출, 1부 |
| 13 | 발표 자료(PPT) 전자파일 | 자유양식, 발표평가 전전일까지 제출 |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 모든 서류는 우편제출 및 이메일 파일 제출 必

* 제출시점까지 2020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8년, 2019년 우선 제출

7. 추진 일정(안)

| 추진 절차 | 추진 주체 | 추진 일자 |
|-------------------------|------------------------------------|--------------------------------|
|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 성장지원사업단 | '21. 2. 1(월) |
| 사업 공고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기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21. 2. 8(월)~3. 9(화) (30일간) |
| 서류심사 | 성장지원사업단 | '21. 3. 11(목)(예정) |
| 선정평가(발표) | 평가위원회 | '21. 3. 17(수)(예정) |
| 지원 대상 선정 발표 | 성장지원사업단 | '21. 3. 22(월)(예정) |
| 이의신청기간 | 성장지원사업단 | '21. 3. 22(월)~3. 31(수)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 성장지원사업단 ⇨ 수행기업 | '21. 4월(예정) |
| 과제수행 | 수행기업 | 협약일 ~ '21. 11월(약 8개월) |
| 중간점검 | 성장지원사업단 | '21. 7월 말~8월 초 |
| 기술가치평가 진행 | 성장지원사업단 | '21. 8~9월 |
|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 '21. 12월 |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음

8.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관련 법령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리지침

기타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9. 문의처

전담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 최혜지 선임, 053-210-9680, hyeji@kiria.org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